

3370만명 털렸는데 보험은 10억… 방치된 ‘사이버 리스크’

대형 플랫폼 조차 최소보험만 가입
의무보험 가입률 2~8% 수준에 그쳐
경제 전반 ‘시스템 리스크’ 우려
낮은 배상액에 기업 보험유인 부족
“대형 사업자 최소가입액 올려야”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에 이르는 ‘전 국민급’ 사고가 났지만, 회사가 들어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보장 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수준인 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300만명 규모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역시 당시 가입해 둔 보장 한도가 10억원 수준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플랫폼·통신사의 사고 규모와 피해자 배상을 뒷받침할 안전판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SK텔레콤도 유출 당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나 같은 수준의 보장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논란 이후



이커머스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손진영기자 son@

유출·랜섬웨어 등을 포괄하는 1000억원 한도 사이버보험에 추가 가입했지만, 4월 발생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에서 양사가 준비해 둔 ‘보험’은 법이 시킨 최소한에 그쳤고, 고액 보장을 미리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관행은 의무보험 제도 설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매출·이용자 수를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개인정보유출 사이버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매출 800억원이 넘는 대기업조차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이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의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에 그친다. 가입률로 따지면 2~8%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예 안 들거나, 들더라도

10억짜리만 든다’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보고서는 하나의 사건이 금융·실물·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을 ‘시스템적 리스크’로 정의하고 통신사·쿠팡의 정보 유출 처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정 기업을 넘어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플랫폼이 사실상 사회 인프라가 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안·규제·보험 장치는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이 낮다”고 짚는다. 과징금 상한은 개정법 시행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민사 배상액이 낮아 보니, 기업은 과징금을 ‘규제 리스크’로만 인식할 뿐 “보험료를 들이면서까지 대비해야 할 수준”으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험회 등은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 가입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곧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 10조원을 넘는 플랫폼·통신사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선 보고서에서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액이 크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사이버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유인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됐지만 피해 고객에 대한 실질적 배상액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민사배상 리스크가 낮은 구조가 사이버보험 가입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한투증권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확대될 것” 미국서도 본사 상대 집단소송 예고

징벌적 손해 10년간 사실상 무용
정부, 제재·과징금 강화 기류
현행 배상액, 불법 억제엔 한계
관건은 기업 ‘고의·중과실’ 판단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뚱이 국내 기업으로 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쿠팡에서 5개월간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2~5배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의 3/5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은 사고방지 및 불법 행위 억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12월 2일 직접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고, 다음 날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재 강화 및 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의 배상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결국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상안 등 자구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가 5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과거 판례를 비춰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뉴욕 연방법원 제소 추진
지배구조·공시의무가 쟁점
본사 책임·통제권 규명 초점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국내 소송에 이어 미국 본토에서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시각으로 이달 8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나선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명백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 자체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차별화된 법리 다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의 원고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시민들도 원고인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로펌 측은 미국 소송을 택한 핵심 이유는 한국보다 강력한 배상 제도와 증거 확보 절차에 있다.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뉴욕 맨해튼 로펌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 상대 소송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뉴시스

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실제로 2017년 1억430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에퀴팩스(Equifax)는 최대 7억 달러(약 1조원)를, 2021년 766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T모바일은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선례가 있다.

또한 재판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를 열쇠로 꼽힌다. SJKP 소속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정보보안 및 IT 인프라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며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쿠팡Inc가 단순한 지주 회사를 넘어, 한국 법인의 데이터 관리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국경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차단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GPS·평점·패널티, 라이더 ‘디지털 족쇄’”

>> 1면 ‘정보 뚫리고…’서 계속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사실상 종속된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현장 문제는 법적 공방을 넘어 사법 정의를 뒤흔드는 ‘원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현직 부장감사의 눈물 섞인 폭로로 발각 뒤집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감사는 쿠팡(CF 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조작적으로 사건을 문졌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에 따르면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근무 기간을 쪼개거나 허위 프리랜서(3.3%) 계약을 맺는 꼼수를 부렸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당시 지휘라인은 ‘불기소 가이드라인’을 내리며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문 검사는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신속히 받길 바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쿠팡이츠가 운행 시간이 아날 때도 라이더의 동선을 추적해 위치 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라이더들은 이미 GPS 추적과 평점·패널티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족쇄’를 찬 채 과도한 감시와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지난 10월 13일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켜놓도록 해 배달앱을 깔고 일하는 노동자 50만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